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
[강수정 의원 대표 발의]

의안번호	2172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1. 12. 23.

발 의 자 : 강수정, 김경완,
조윤형, 윤영희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·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복무 등에 관한 인사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신설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정대리 규정(안 제2조)
- 나. 지정대리 규정(안 제3조)
- 다.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12. 23. ~ 12. 28.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정대리)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, 출장, 그 밖의 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(이하 “대리”라 한다)한다.

1.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.
2.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.

제3조(지정대리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(별지서식)로써 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직무대리명령서

1. 피대리 직명 :
2. 대리자 직, 성명 :
3. 대리기간 :

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.

년 월 일

직 성명 (인)